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9681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20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1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	2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9.

(3) 회 부 일 : 2025. 4.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9.

(3) 회 부 일 : 2025. 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 의무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8호, 제5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 9.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u> 9.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55조의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u>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u> 2. <u>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u> 3. <u>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u> 4. <u>취약계층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u> 5. <u>그 밖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범위·방법·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의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그 규정 방식에 있어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존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인 반면,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두 개정안의 비교 >

	백혜련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규정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의무 포함사항으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무 부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	3년마다 의무 실시 (결과 공표, 실태조사 내용 명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재량 실시, 실시주기 없음)
	실태조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조항 마련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위한 자료요청 권한 명시	

□ 한국법제연구원이 2024년 6월에 발간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음.

- 첫째, 현재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정책 및 사업은 「모자보건법」상 영유아검진, 「감염병예방법」 및 「학교보건법」상 예방접종, 「아동복지법」상 영양 및 정신건강 관리 등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와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반감됨.
- 둘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하여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자원 및 현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함.
- 셋째, 태아-신생아-학령기아동-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과정별로 연계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두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의 위 보고서에서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전달, 이를 제공할 인력 및 조직, 건강보험 등과 같은 재원과 그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¹⁾

□ 다만,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현재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에 따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와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다양한 계획, 정책 및 사업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거나 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현재의 분절성은 유지된 채 복잡성만 추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 제5조2)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자보건사업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상위 계획으로서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모자보건사업이 개정안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개정안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WHO에서는 보건의료체계를 ① 서비스 공급(service delivery), ② 인력(health workforce), ③ 정보(information), ④ 의약품, 백신 및 기술(medical products, vaccines and technologies), ⑤ 재정(financing), ⑥ 리더십 및 거버넌스(leadership and governance)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Strengthening Health System to Improve Health Outcomes: WHO's Framework for Action, 2007)

2) 「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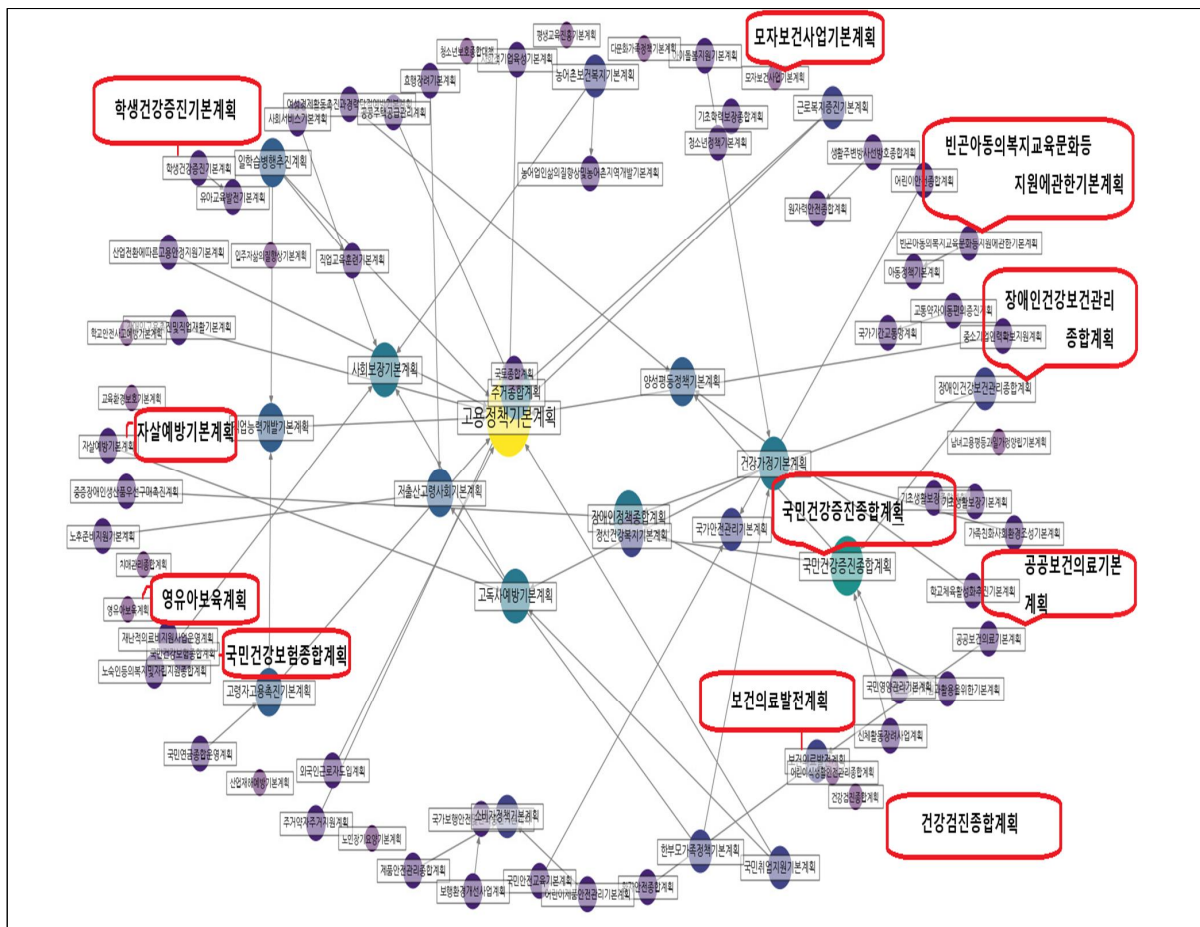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특히 국회미래연구원³⁾에 따르면 현재 사회정책분야에는 68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 중 소아·청소년의 보건 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11개의 법정계획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임.
- 법률적으로 중장기계획 간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수립 주기 불일치로 계획간 조정이 어려워 발생하는 정책 간 비일관성의 문제를 개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구조 >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2024.12.30.

3) 국회미래연구원,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2024.12.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9개의 법정계획을 분석한 연구⁴⁾에서도 법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학교보건법」상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자살예방법」상 자살예방기본계획,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9개의 법정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들을 분석하였음.

(참고자료)

□ 따라서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는 관련 계획 및 사업들을 개정안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법정계획으로 신설된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14~'15년 세월호·메르스, '18~'20년 의료계 집단휴진, 코로나19 등 각종 의료현안으로 인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24.2월 의료개혁 4대과제, '23.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23.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는 입장임.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법정계획을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4.08.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보완)

-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다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복지법 제11조)에서 0~17세 아동의 건강·발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아동의 보건, 건강, 양육,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동 실태조사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공표를 위한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신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2)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55조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 제15조만으로도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가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등의 필수의료 붕괴는 법령 미비보다는 법령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함. 이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적극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국가법정계획 주요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법정계획을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4.08. 발췌

[표 1]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국가법정계획 개요

구분	국가법정계획	근거 법령	수립 주체	관련 위원회(소속)	수립주기	현행계획
건강 분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10년	5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5년	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교보건법	교육부		5년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5년	2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국무총리)	5년	5차
아동·청소년 일반 분야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5년	2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외 청소년 관계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5년	7차
장애아동· 청소년 분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5년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5년	6차

[표 2] 국가법정계획 중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적 보건의료 관련 내용

구분	법정계획	세부 내용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사각지대 해소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아동·청소년 건강검사 항목 개정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학교 건강검사 항목 개정(정신건강, 소아비만, 대사성 질환 등 성장기 건강위험 요인 중심), 학생 건강 체력평가 대상 확대 • 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 수정·보완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존 검진 17개 항목에 안질환, HDL·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 피부병, 허리둘레 등 9개 항목 추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및 이력 관리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확대(남성 청소년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 관리(나이스 자동연계) 대상에 유치원 추가 •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 지원 확대

[표 3] 국가법정계획 중 아동·청소년 건강행태 관련 내용

구분	법정계획	세부 내용
청소년 금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활성화 • 담배 판매자 등의 단속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
음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교육 강화 • 음주 조장 환경 개선
식생활(영양)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 및 식자재 관리 강화 • 청소년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 자료 및 교육 가이드라인 등 개발 보급 • 청소년 수련 시설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 • 저소득층 등 취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 지원 강화 추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급식 지원, 모바일쿠폰 제공)
신체활동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 학교 단위 체육활동 확대(체육 수업시간 확대,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학생 맞춤형 체력 향상 지원,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청소년의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비만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학교·학원 주변 비만 유발 환경 개선 • 시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학생 비만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지원 •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 등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지속
유해 약물 오남용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 단속 •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 및 예방 교육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유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유 지원 강화(중독재활센터 확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기숙치유 프로그램 지속 지원, 사례관리 확대 등)
모바일 헬스 케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초등 5·6학년 또는 중등 1·2·3학년으로 참여 학생을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적극적인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진행하도록 지원

[표 4] 국가법정계획 중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관련 내용

구분	법정 계획	세부 내용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추진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1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 12세 이하 충치(영구치)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사업
장애아동 치과 접근성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권역장애인가구진료센터 등) 강화 및 진료비 지원 강화

[표 5] 국가법정계획 중 아동·청소년 중증·만성질환 치료 및 재활 관련 내용

구분	법정계획	세부 내용
장애아동 건강관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장애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 장애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 체계 마련
만성질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리(알레르기성 질환, 소아당뇨 등)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천식, 아토피 등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추진 -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지속 운영 - 만성·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 및 학교 내 지원 강화(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투약 및 약품 보관 장소 제공) - 소아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당뇨 관리 기기 지원, 교육상담 확대
어린이 중증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공 전문진료센터 확대 및 단기 입원 병동 등의 설치 지원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중증 소아환자 부모 돌봄 부담 완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중증소아환자 부모를 위한 단기 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선 추진
장애아동 재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 - 어린이 재활의료 기관 시범사업 전국 확대

[표 6] 국가법정계획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내용

구분	법정 계획	세부 내용
자살 예방 및 마음건강 교육, 유해 정보 관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제2차 학생건강증진종합계획	- 초·중고 학생을 대상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 교육 의무화 - 온라인 자살 유발, 유해 정보 차단 강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제1차 학생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지속 시행, 미 실시 학년용 추가 검사 도구 개발 추진(교육부) -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 기관 연계 상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필요시 의료기관 치료 지원(교육부) - 청소년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전국 확대(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임상심리사 배치(17개 시도 센터)(여가부) -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여가부) -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 실시(여가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근 학교 지원 통해 상담 서비스 강화(여가부) - 자살 시도자 등 위기 학생 지원(저소득 가정 치료비 지원)(교육부)
디지털 기기 등의 이용 장애 대응 강화	제1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상담 - 과몰입·중독 학생 대상 다양한 치유상담 서비스 운영 및 민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운영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확충 - 아동 자살 예방 심리부검 DB 구축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운영 -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지원체계 연계 활성화 - 민간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마음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치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숙형 치유 시설(디딤센터)의 권역별 확대 및 중독 문제 치유를 위한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 성인 외 소아·청소년 추가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통해 도박 문제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